



제428 회국회(임시회)
제1 차 보건복지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유형화 및 관리 강화 등〉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641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간 연계·협력 촉진 책무 규정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4
다. 관계 기관 의견	7
2.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방식 유형화	8
가. 개정안의 내용	8
나. 검토의견	10
다. 관계 기관 의견	11
3. 부지·시설물 처분 제한 등 관리 강화	12
가. 개정안의 내용	12
나. 검토의견	17
다. 관계 기관 의견	22

I. 개요

1.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64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6인
- (2) 제 안 일 : 2025. 4. 8.
- (3) 회 부 일 : 2025. 4.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의료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의 관련 기관간의 상호 연계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산업기술단지 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정·운영 중인 다른 단지·특구 등과의 연계·협력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시 해당 입지의 규모, 특성,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조성·육성 방식 또는 집약적 조성·육성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고,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과 첨단의료복합단지 간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다른 단지·특구 등의 연계·협력을 촉진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시 해당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조성·육성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5조제1항 후단 및 제5조의2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간 연계·협력 촉진 책무 규정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단지등”이라 한다) 간의 연계·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예산 확보 노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과 첨단의료복합단지(제5조제1항에 따른 단지등을 포함한다) 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침복단지 간, 침복단지와 단지등¹⁾ 간 및 단지등 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침복단지와 단지등의 관리·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침복단지와 단지등은 산업개발이나 지역 활성화 또는 외자 유치 등 경제발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지역 내에 예외적 권한과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수단인 ‘지역 산업클러스터’의 일종인데,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역 산업클러스터가 과잉 지정되었다거나 지역 산업클러스터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범부처 체계가 정립되지 못하여 있다는 등 관리·운영상의 비효율이 지적되고 있어 이들의 연계·협력 촉진을 독려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지역산업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일정 지역 내에서 산업발전을 위한 경제주체들이 기능적·공간적으로 연계되어 산업발전 및 혁신 창출을 위한 산업생태계를 형성하는 공간적 집적

1) 「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이하 “단지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8. 그 밖에 개별 법률에서 지정되어 개발되는 지역으로서 침단의료복합단지로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체로 정의²⁾되는 ‘지역 산업클러스터’에는 2025년 2월 현재 중복 단지(2개)를 포함하여 단지·구역·특구·지구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총 2,437개가 지정되어있는데,

예컨대 총 26종의 지역 산업클러스터가 100개 이상 있는 부산광역시의 경우, 관내 지역 산업클러스터 면적을 모두 합한 값(1,824km²)은 부산광역시 전체 면적(770km²)의 약 2.4배로 최대 12개의 지역 산업클러스터가 중첩되어 있는 등 유사·중복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음.

< 지역 산업클러스터 지정 현황 >

(단위: 개)

구분	지역 산업클러스터	지정 현황	구분	지역 산업클러스터	지정 현황
1	도심융합특구	5	45	관광특구	36
2	입지규제최소구역	5	46	국제회의복합지구	7
3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43	47	문화산업단지	3
4	산업혁신구역	1	48	문화산업진흥지구	11
5	도시재생혁신지구	12	4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1
6	투자선도지구	16	50	인쇄문화산업단지	-
7	혁신도시	10	51	문화지구	6
8	기업도시	4	52	동계올림픽특구	5
9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	53	규제자유특구	29
10	국가시범도시	2	54	글로벌혁신특구	4
11	첨단과학기술단지	-	55	지역특화발전특구	175
12	해양관광진흥지구	-	56	산업기술단지	19
13	수소도시	9	57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30
14	국가산업단지	52	58	신기술창업집적지역	18
15	농공단지	482	59	지역중기스마트혁신지구	-
16	도시첨단산업단지	48	60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51
17	모빌리티특화도시	3	61	농촌융복합산업지구	40
18	새만금투자진흥지구	1	62	말산업특구	14
19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	2	63	국가축산클러스터	-
20	스마트그린산업단지	21	64	국가식품클러스터	1
21	이전기업전용단지	-	65	종자기술연구단지	-

2) 손동희, 『지역 산업클러스터 정책·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24. 11. 14.

구분	지역 산업클러스터	지정 현황	구분	지역 산업클러스터	지정 현황
22	일반산업단지	738	66	화훼산업진흥지역	1
23	임대전용산업단지	24	67	우수외식업지구	19
24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1	68	마리나산업단지	-
25	혁신성장진흥구역	2	69	해양박람회특구	1
26	경제자유구역	36	70	해양산업클러스터	2
27	자유무역지역	13	71	수산식품클러스터	2
28	외국인투자지역	30	72	양식산업단지	-
29	소재·부품·장비산업특화단지	10	73	김산업진흥구역	5
30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12	74	해양치유지구	-
31	기회발전 특구	46	75	연구개발특구	19
32	첨단투자지구	9	7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4
33	수소특화단지	2	77	소프트웨어진흥단지	-
34	산학융합지구	17	78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	-
3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6	79	연구산업진흥단지	2
36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1	80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	-
37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	81	첨단의료복합단지	2
38	폐광지역진흥지구	7	82	한방산업단지	-
39	지역혁신융복합단지	14	83	녹색융합클러스터	2
40	재자원화사업클러스터	-	84	물산업실증화시설및집적단지	1
41	노후거점산업단지	63	85	우주산업클러스터	3
42	뿌리산업특화단지	58	86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1
43	생태산업단지	105	87	석재산업진흥지구	-
44	문화특구	13	합 계		2,437

주: 2025년 2월 현재

자료: 기획재정부

- 참고로, 최근 정부는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클러스터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려는 추진전략³⁾(’25. 1월)과 지역 산업클러스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 산업클러스터 간 연계와 성과평가 등을 강화하는 추진계획(’25. 2월)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 있음.

□ 다만,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첨단의료단지법」”이라 한다)은 첨복단지 외에 각 단지등을 비롯한 지역

3) 정부(국가바이오위원회),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2025. 1. 23.

산업클러스터 전반을 아우르는 일반법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안 제3조의2와 같이 「첨단의료단지법」에서 침복단지 외에 각기 다른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둔 단지등 간의 연계·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까지를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는지가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현행법 제10조4)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침복단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침복단지 육성의 기본 방향과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이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과 국내외 의료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므로, 별도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는 안 제3조의2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4)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소관 사항의 추진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방안을 종합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되,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운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방안 중 추진일정 및 증복·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 협의의 협의를 거칠 수 있으며, 종합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의 기본 방향과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과 국내외 의료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7.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성과의 활용 및 전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방식 유형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첨복단지의 입지를 선정할 때 ‘넓은 지역에 대규모 조성·육성’ 또는 ‘좁은 지역에 집약적 조성·육성’ 등 2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유형화하고, ‘좁은 지역에 집약적 조성·육성’하는 방식으로 입지를 선정할 때에만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하게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이하 “단지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① ----- ----- ----- ----- ----- --. 이 경우 입지 선정은 그 규모, 특성, 지역 등을 고려하여 넓은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육성하는 방식 또는 좁은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육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의 입지 선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국토균형발전 등 첨단의
료복합단지를 조성·육성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③·④ (생 략)

<신 설>

<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한 입지
선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
1항 후단에 따라 좁은 지역에 집약
적으로 조성·육성하는 방식으로 첨
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
는 경우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
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균형발전을 고
려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지 선정 요건
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지 선정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침복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는 방식을 침복단지의 범위와 규모에 따라 ‘넓은 지역에 대규모 조성·육성’ 또는 ‘좁은 지역에 집약적 조성·육성’ 등 2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선정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침복단지를 지정할 때 해당 입지의 지역적·산업적 특성이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2025년 6월 현재 ‘대구 신서혁신도시’와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2곳이 침복단지로 지정·고시되어 있는데, 침복단지 추가 지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는 관련 연구⁵⁾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 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임.

□ 그런데, 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넓은 지역에 대규모 조성·육성’과 ‘좁은 지역에 집약적 조성·육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복단지 입지 선정 유형별로 선정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서로 다르게 정하여 적용하게 된다면 입지 선정 유형이 편의에 따라 해석·적용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예산에 내역사업으로 편성된 ‘침복단지 진단 및 성과평가, 추가 지정 필요성 연구(’24.9월~’25.6월)’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2곳의 침복단지 외에 침복단지를 추가로 지정·고시할 것인지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과 같이 현행법 제5조제2항제6호⁶⁾를 삭제하고 제5조의 2를 신설하게 되면 침복단지를 ‘좁은 지역에 집약적 조성·육성’하는 경우에만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되는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하여야 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⁷⁾를 감안할 때 침복단지를 ‘넓은 지역에 대규모 조성·육성’하는 경우에도 현행과 같이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현행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삭제가 바람직한지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침복단지 진단, 성과평가 및 추가 지정 필요성 등에 관한 정책연구('24.9월 ~ '25.6월)가 진행 중이므로 입지 선정 방식을 다양화(안 제5조)하고 그 요건을 별도로 규정(안 제5조의2)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6) 「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의 입지 선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국토균형발전 등 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요건)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7) 헌법

제123조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3. 부지·시설물 처분 제한 등 관리 강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침복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분양받은 부지나 시설물(이하 “부지등”이라 한다)을 처분하려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다른 의료연구개발기관으로 양도대상을 제한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부지등을 양도받으려는 자는 미리 입주승인을 받도록 하며, 경매 등으로 부지등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입주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 또한, 입주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 승인이 취소된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부지등의 양도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양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② (생략) <u><신 설></u>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침단의료복합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령을 적용한다.</u>
<u><신 설></u>	<u>제31조의2(부지등의 처분 제한) ① 입</u>

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부지 및 시설물(분양받은 자로부터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지 및 시설물을 포함하며, 이하 “부지등”이라 한다)을 처분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의료연구개발기관에 부지등을 양도하여야 한다.

②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부지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지등의 양도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부지에 대한 양도가격: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부지의 취득가격

나.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 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신 설>

<신 설>

다.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
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가 감정평가한 금액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지등을
양도받으려는 자는 미리 제31조제1
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지등의
처분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취득
가격·취득일 등 양도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3(경매 등에 의한 부지등의
취득) 경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부지
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
개월 이내에 제31조에 따른 입주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의4(부지등의 양도명령) ① 보건
복지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입주
승인(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에 따
라 입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라 입주 승인이 취
소된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하
여 6개월에서 1년의 범위 내에서 기
간을 정하여 소유한 부지등을 양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31조의5(이행강제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양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이내에 그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의4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의4에 따른 양도명령을 받은 자가 양도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 승인 사항을 변경한 자

2. (생략)

<신설>

<신설>

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4조(벌칙) -----

-----.

1. 제31조제1항(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현행과 같음)

3. 제31조의2제1항 및 제3항(제31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지등을 양도한 자
제36조(과태료) ①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지등을 양도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침복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대부·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⁸⁾

이미 침복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부지등을 처분하려 할 때 적용되는 양도대상 및 양도가격의 한도나 입주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양도명령·이행강제금) 등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은 완비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런데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침단의료단지법」에 따라 각종 규제·세제에 관한 특례를 인정받고, 용자나 부대시설 설치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⁹⁾ 부지등의

8) 「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및 제3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료 및 대부료의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제38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게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9) 「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 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양도대상·가액 등을 제한하는 등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 개정안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이거나 사용승인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부지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대상(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다른 의료연구개발기관)과 양도가격을 각각 제한하고,

부지등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리 입주 승인을 받도록 하되, 경매 등으로 부지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 승인을 받도록 하며,

입주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입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부지등의 양도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양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침복단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타당한 취지로 보임.

- 참고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도 부지 등의 양도제한이나 양도명령 등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¹⁰⁾

제13조(융자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채단 및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수행하는 의료연구개발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자를 할 때에 융자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실패하여 지원 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불간소한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하는 금액 중 원리금 상당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이자제한법」 제4조에 따른 간주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16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부지의 양도제한 등) ① 입주기관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양수·임차·사용대차 또는 전차(轉借)하거나 건축물등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으려는 자는 미리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다만, 안 제31조의2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이거나 사용승인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부지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된 다른 의료연구개발기관’에 부지등을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매수를 신청한 다른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없는 때에는 부지등의 양도가 원천 불가하게 되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은 없는지가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9조에서는 산업시설구역 내 공장등을 소유한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관¹¹⁾’에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도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부지에 대한 양도가격: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부지의 취득가격

나.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 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취득일 등 양도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경매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으로부터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1조(건축물등의 양도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제38조제2항 및 제39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관이 소유하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입주기관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양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제1항),

관리기관의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된 다른 기업체나 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에 양도하게 함으로써 공장의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복수의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제2항).¹²⁾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관리업무 위탁기관) ①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2.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전체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그 회원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6.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관리권자가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중소기업은행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또한, 개정안은 부지등의 처분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바,

침복단지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과 구법 질서에 대한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할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침복단지 입주 승인¹³⁾을 받은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09년 2월 「산업집적법」이 산업용지 처분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때 이 법 시행 이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체결되는 산업용지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취지의 적용례가 규정되었음.¹⁴⁾

□ 아울러 법제적 측면에서는, 2020년 7월 법률 제17219호로 시행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종전의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을 포함하는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가 일괄 정비된바,¹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유관기관)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6. 관리기관이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13)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입주의 승인 등) ①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체결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한다.

1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이를 반영하여 안 제31조의2제3항제2호의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안 제3조제3항은 ‘침복단지의 관리’에 관하여는 「침단의료단지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령의 적용이 ‘침복단지 육성’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침복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침단의료단지법」과 다른 법령이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을 때 어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침복단지 육성’에 보다 더 유리할지가 명확하지 아니할 수 있고,

침복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규제적 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며, 위반 시 이행강제금 및 처벌규정 등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침복단지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며, 안 제3조제3항, 제31조의2, 제31조의3, 제31조의4, 제31조의5, 제34조 및 제36조를 수용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